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5일, 박형수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6.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3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9.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형수 의원)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 및 경남과 울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음. 이는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재난첨단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지역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산불 대응의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전환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본 특별법은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존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또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재난에 대응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음.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수습과 지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번 (초)대형산불이 피해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여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인하여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 법률안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거나 ②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피해지역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이미 지원되었거나 앞으로 지원될 정부 계획의 내용과 함께, 각 정책 수단을 담당하는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복 규정이나 정책의 비일관성을 방지하고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제정안을 수용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별법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람, 사항, 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산불에만 적용하려는 지원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이 경우, 해당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해당하는 동 제정안에 반영하기보다는, 별도로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일반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법률안에 대하여 산불진화 지휘체계 및 역할 조정에 대한 검토, 재난대응체계 및 매뉴얼 개선, 행정안전부의 산불 대응에 대한 역할 수행 등의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검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복구비 추가 지원, 피해지역 2차 특별교부금(또는 증액교부금) 검토, 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의 피해지원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